

『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시가 권장하는 사업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을 규정함(안 제12조).
 -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
 -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국내외 행사, 대회 및 사업 지원
-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맞게 조문 수정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규제개혁T/F팀, 청렴정책팀과 합의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「지방재정법」(‘14.11.29. 시행) 및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(‘15.4.29. 공포, 시행) 개정에 따라 시가 권장하는 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따른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맞게 기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12조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을 규정하고
 -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
 -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국내외 행사, 대회 및 사업 지원
-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맞게 조문 수정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「지방재정법」(‘14.11.29. 시행) 및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(‘15.4.29. 공포, 시행) 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출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